## 전남대학교 시간제등록생 학사운영규정

[시행 2024.6.7] [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2027호, 2024.6.7, 일부개정]

전남대학교 교무처 062-530-1023

- **제1조**(목적)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학칙 제61조에서 규정한 시간제등록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선발 및 등록) ① 시간제등록생은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30% 이내, 학부(과)정원의 30% 이내에서 학기별로 선발하며, 등록기간은 한 학기로 한다. <개정 2024. 6. 7.>
  - ② 시간제등록생을 선발시 우리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으로 학점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자는 그 정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.
  - ③ 시간제등록생의 등록금은 해당 학기 신청 학점수에 따라 산정하되, 1학점당 등록금은 해당대학 수강과목 개설학년 재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.
- **제3조**(학사관리) ① 시간제등록생은 등록기간 내에서 선발된 모집단위소속으로 보며, 학사업무는 해당모집단위가 속한 대학에서 담당한다.
  - ② 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한 자는 휴학할 수 없다.
  - ③ 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한 자에게는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학생증을 발급하며, 유효기간은 등록한 한 학기로 한다.<개정 2024. 6. 7.>
- **제4조**(성적처리 및 학점 인정)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수강과목의 성적처리 및 학점 인정은 우리 대학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.
- **제5조**(교육과정) 우리 대학에서 학위취득을 원하는 시간제등록생은 우리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 야 한다.
- **제6조**(학점은행제 연계운영) ① 시간제등록생이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간제등록생 또는 기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합하여 연간 4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,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
  - ② 1개 기관에서 인정하는 학점은 105학점까지 가능하다.
  - ③ 시간제등록제도와 학점은행제도의 연계운영을 위하여 우리 대학은 시간제등록생의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, 학점인정신청, 수수료납부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
- 제7조(학위신청요건) 우리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 - 1.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우리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84학점 이상(전공 30학점 이상)인 경우
  - 2. 학점은행제의 학사과정에서 인정된 학점이 140학점 이상(교양 30학점 이상, 전공 60학점 이상)인 경우
  - 3. 2개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 인정학점을 이수한 자
- **제8조**(학위취득의 신청) 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한 자가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우리 대학에서 학위취득을 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사학위 신청서 1부
  - 2.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서 1부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기타 총장이 학위취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
- 제9조(학위수여 심사) ①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한 학위수여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두며, 이 위원회에서 학위수여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.
  - ② 심사위원은 교무처장, 교무부처장, 교학기획부처장, 해당 대학 학장 및 부학장, 학과장 또는 해당 전공 주임교수로 하고,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<개정 2024. 6. 7.>
- 제10조(학위수여) ① 총장은 학위수여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교육부에서 정한 기간내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 2024. 6. 7.>
  - ② 학위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위증을 수여하되, 학위번호는 정규과정의 학생과 구별하여 정하고 학점인정등 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임을 명시한다.
- 제11조(학적관리) 시간제등록생에 대하여 별도의 학적관리를 하며,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, 학사학위증명서(별지 제 3호) 등을 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6. 7.>

제12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용한다.

**부칙** <제2027호,2024.6.7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